2019년도 제2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o 일 자 : 2019. 11. 20.(수요일)

o 방 법 : 온라인심의

o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Ⅱ. 회의안건 및 결과

-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 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5건(안건번호 제2019-151443호~ 제2019-151502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 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금번 심의안건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5개인 웹하드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합법저작물 시장을 위축시켜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 특히 여기 보이는 5개의 웹하드 서비스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나 적극적인 조사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사이트이므로 이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 방조한 것은 아닌지 향후 입법적 해결을 촉구하는 바임
- B 위원: 상기 게시물들은 정당 권리자가 아닌 자가 공중의 이용에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33조3항의 요건에 충족함. 다만, 삭제 또는 전송 중당된 경우에는 시정의 권고를 하여야 할 것임.
- C 위원 : 본 심의안건 65건의 게시물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D 위원: 안건번호 제2019-151443호~151502호는 총 5개의 OSP에 게시된 '(영화) 악질경찰(2019)' 등 65건의 게시물들은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상물들임. 이들을 온라인상으로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에 복제 전송을 하여수익을 얻고 있는 바, 이는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벗어나는 불법 이용행위에 해당함. 이에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

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19년 제2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20.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